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계약목적)

기관은 수급자의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 및 잔존기능 훈련을 통해 현 상태 유지와 악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성실히 의무를 수행 한다

1. 서비스대상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 (원)	<u>2,306,400</u>	<u>2,083,400</u>	<u>1,485,700</u>	<u>1,370,600</u>	<u>1,177,000</u>	<u>657,400</u>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 장기요양수가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금(15%기준/원)
가-1	30분 이상	<u>16,940</u>	<u>2,540</u>
가-2	60분 이상	<u>24,580</u>	<u>3,680</u>
가-3	90분 이상	<u>33,120</u>	<u>4,960</u>
가-4	120분 이상	<u>42,160</u>	<u>6,320</u>
가-5	150분 이상	<u>49,160</u>	<u>7,370</u>
가-6	180분 이상	<u>55,350</u>	<u>8,300</u>
가-7	210분 이상	<u>61,670</u>	<u>9,250</u>
가-8	240분 이상	<u>68,030</u>	<u>10,200</u>

- 방문목욕 장기요양수가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금(15%기준/원)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 안함 (60분 이상 제공)	<u>48,690</u>	<u>7,300</u>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 안함 (40분~60분 제공)	<u>38,950</u>	<u>5,840</u>
요양보호사 2명이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② 복지용구

복지용구 이용료는 장기요양대상자 또는 비급여 대상자의 경우 모두 공단 고시 급여액에 준한다.

③ 본인부담금

- 일반 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의료, 감경대상자 : 6%, 9%
-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 무료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 부담은 기관과 수급자 및 보호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